

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9. 4

의안 번호	99-20
----------	-------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제정이유

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 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장애인복지법 제26조
- 전북사회 65140-1485('98. 11. 4)호 공공시설내 매점, 자판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협조

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㎡이하인 시설에 한한다.

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

제3조(사전광고) 김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식료품, 사무용품,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소식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 및 구비서류)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계약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
3. 장애인 수첩(사본)
4.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(해당 장애인에 한함)

제5조(우선계약)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%범위내로 계약하되, 1인1개소에 한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.

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,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.

1. 생활보호대상 장애인
2. 저소득 장애인
3. 중증 장애인
4.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
5.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

제6조(계약자의 의무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인복지법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인지체 장애인은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용료 등)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 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.